

# 법률 대중화로 독자와 법의 거리 좁힌다

판례 중심 상담사례집 등 부쩍 인기 끌어…법률교양서 출판도 잇달아

올해 7월 17일은 1948년 대한민국이 헌법을 제정한 지 마흔 다섯 해째 되는 날이다. 같은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 헌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아직까지 대중과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중이 법을 가깝게 하지 못하게 된 이유중의 첫째는 모든 법률서가 한자 투성이로 써어져 있는 ‘문서’로 대중들의 머리속에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들은 지금까지 법전을 비롯한 여러 법률서를 ‘고리타분한 것’ ‘어려운 것’ ‘법관이 될 사람들만 보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물론 대중들이 생각해온 바와 같이 법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다. 하지만 법을 몰랐다 해서 누군가 당사자를 보호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호의 손길을 뻗쳐주지도 않는다. 알기도 힘들지만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법인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부정적 단정’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단초를 서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들을 위한 생활법률서들이 그 증거물.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사항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도서를 비롯해서 상담사례집 등 법과 독자의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책, 간단한 법률적 상식을 콩트나 옛날이야기를 끌어들여 재미있게 구성한 책, 더 나아가 재미있게 꾸며져 있는 법률교양서에 이르기까지 교양서로서의 법률서적이 적잖이 눈에 띠는 것이다.

## 서점 한 켠 차지한 대중 위한 생활법률서

대중적인 법률해석서를 시리즈로 내고 있는 출판사로는 청림출판사(법률상담시리즈), 나라말씀(손안에 드는 작은 법률책 시리즈), 법전출판사(법률상담 시리즈), 시민법률연구원(법률상담 시리즈), 평단문화사(생활법률 시리즈), 김영사(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등으로 많게는 한 시리즈가 27권까지 나와있는 상태이다. 이밖에 법조각의 ‘재미있는 형법’, 현대정보문화사의 ‘이양원의 생활법률 디제스트’, 대홍출판사의 ‘알기쉬운 생활법률’ 등의 단행본이 시중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활법률서들이다. 시리즈를 내는 출판사의 대부분은 법률도서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기도 하다.

지난 88년 「어음 수표의 법률지식」을 출판한 이후 지금까지 26권의 법률상담시리즈를

**법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법을 몰랐다 해서 누군가 당사자를  
돕거나 보호해주지도 않는다.**

**모르면 손해인 것이 법이다.**

**근래에 들어서 서점에서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생활법률해설서는**

**일정부분 독자들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재미를 함께 얻을 수 있어**

**독자와 법의 거리를 좁혀주고 있다.**

출판한 청림출판사는 편집부 직원들 모두 법학과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출판사의 책들은 모두 문답형식으로, 이미 발생한 법률적 사고와 발생할 가능성성이 높은 법률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법률의 대중화’를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법에 생소한 일반서민들에게 법률적 사례를 세분화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시리즈 세번째로 나온 「부동산의 법률지식」이라고. 주택임대차, 주택정책,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부동산 매매 등 법률적인 사항을 비롯해서 아파트분양정보 등 시사성 있는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 이 책은 벌써 20판을 찍고 있다.

## 실제 법적인 문제에는 약간의 도움뿐

대중적 법률서가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게 된 데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한창일 때는 부동산에 관한 세부 토지거래규제 등기 등의 내용을 다룬 법률서들이, 경제상황의 악화로 부도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에는 어음 수표 채권 채무 계약 금전대차 회사설립 운영 특허 등 경제에 관한 법률서들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으로 잘 펼려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노사분규가 급증할 때는 노동법 전반에 걸친 해설과 행정해석 노동부 예규 판례 등을 해설한 법률서들이 잘 팔리는 현상을 보이고, 이밖에 산재사고 발생시 보상절차 보상액 산정방식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해등급 판정 등을 다룬 생활법률서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자동차대수의 급증으



전문화된 출판사들에서 펴낸 생활법률서 시리즈. 사례별로 세세한 상담내용을싣고 있다.

로 자동차에 관한 대중 법률서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 출판담당자들의 지적이다.

법률상담 사례집 이외에 특색있는 책으로는 한기찬 변호사가 쓰고 김영사가 펴내고 있는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이 시리즈는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제도 등을 선정해서 사례화하고 콩트나 옛날 이야기 등을 끌어들여 설명해 주고 있다. 10권 완간 예정으로 현재 재산법, 가족법, 형법 등을 다룬 책을 펴냈는데 그중 재산법을 다룬 1편은 91년 12월에 펴내 올해 5월 현재 17쇄를 인쇄할 정도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2, 3권도 계속 판매가 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외에 교육과학사는 ‘법학교양총서’라는 이름으로 법률자체에 내용중심을 두지 않고 있는 도서를 시리즈로 펴내고 있다. 「法 속에서 詩 속으로」(최종고)라는 시집을 비롯해서, 「法理 속의 人間」(장경학), 「法이라는 이름의 電車」(안경환) 등의 에세이집이 그것으로 법의 기원, 법과 문학의 관계, 그리고 법을 중심으로 엮어지는 여러 학문과의 관계 등을 조명하는 사례를 여러권의 책으로 엮어 놓았다.

이처럼 많은 생활법률서와 법률교양서는 실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김영사가 펴낸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의 서문격인 ‘법률 여행을 시작하려는 당신에게’라는 글에서 이러한 책의 기획의도를 살펴보면 “이 책이 실제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쳐서 당장 실용적인 해답을 구하려는 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실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법률상담집을 구해보거나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더 빠르고 옳은 길”이라 표현하고 있다. 즉 이 시리즈가 전문적인 법률서적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교양인들의 법률상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다는 뜻으로 풀이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기획의도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생활법률서에서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 독서카드 활용해 독자들의 법적 도움 주기도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라 해도 대략적인 개요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과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대강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서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생활법률서를 내고 있는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독자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독자카드는 대부분 차후에 발행할 책의 내용을 묻고 있는데, 다른류의 도서에 끼워져 있는 독자카드보다는 비교적 상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영사의 경우 현재 접수되고 있는 독자카드 중에 자동차에 관한 법률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또한 독자카드를 우송해주는 독자들의 궁금증은 간단한 사항일 경우 편집부에서 직접 상담해주고 복잡한 사안일 경우에는 저자와의 서면상담을 출판사측에서 주선해주고 있어 각 출판사들이 법과 대중의 거리 좁히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성수 기자